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최병준 의원 외 30명)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1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최병준 · 정세현 · 이수경
안희영 · 박창석 · 신호광
한창화 · 남영숙 · 고우현
박영환 · 김상현 · 김준열
박영서 · 조주홍 · 김희수
윤창욱 · 배진석 · 박현국
박정현 · 박차양 · 박승직
조현일 · 황병직 · 나기보
도기욱 · 박용선 · 정영길
김진욱 · 김시환 · 남용대
박미경 의원(31명)

1. 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7. 3. 21.시행)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사용 항목 신설(안 제3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② (생략)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u> <u><신 설></u> <u>2. ~ 4. (생략)</u> <u>④ ~ ⑥ (생략)</u>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 하는 경비</u> <u>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u> <u>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u> <u>④ ~ ⑥ (현행과 같음)</u>

관계법령 발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4. 삭제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법무혁신담당관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 지 훈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20. 8. 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 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건축디자인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건축디자인과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7. 3. 21. 시행)되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 전정우 (054-880-4021)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외 2건)

1. 관련 : 건축디자인과-14983(2020.8.5.)호, 축산정책과-7097(2020.8.5.)호, 농업정책과-9837(2020.8.6.)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건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7.3.21.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자원 조례안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한 결과, 안 제8조(양봉 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 사업(20년 기준, 5개 사업, 도비 9억) 외에 신규 사업이 (교육)한건임을 전제할 때 향후 5년간 50백만원*이나 ◦ 향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후 신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의 지속적인 확보 등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 제6조의2(지원범위)는 의안의 내용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범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할 것이나, ◦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추가로 재정 소요가 발생할 시에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 확보 방안,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끝.

예산담당서기관

수신자 건축디자인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무관	김정윤	예산총괄팀장	이상현	예산담당관	전결 2020. 8. 7. 서정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110	(2020. 8. 7.)	접수	건축디자인과-15165	(2020. 8. 7.)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kgy0102@korea.kr	/ 비공개(5)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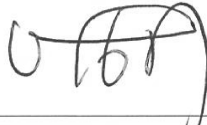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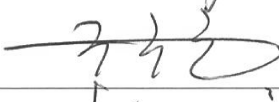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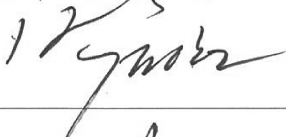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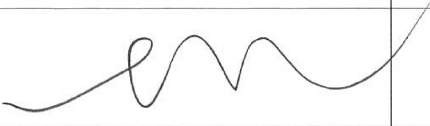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최 병 경	최 병 경	
김 세 현	김 세 현	
이 두 명	이 두 명	
안 희 영	안 희 영	
박 광 석	박 광 석	
신 준 상	신 준 상	
김 준 태	김 준 태	
문 예 수	문 예 수	
고 우 현	고 우 현	
박 영 환	박 영 환	
권 상 현	권 상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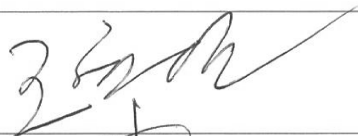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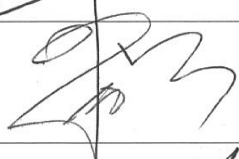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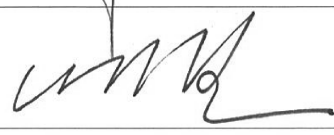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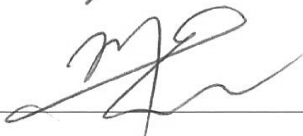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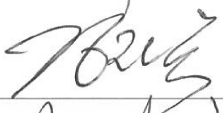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김 준영		
박 매		
전 국홍		
기 회수		
신 창우		
배 진석		
박 현우		
박 정현		
박 차영호		
박 강석		
박 등재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조 현민		
황 병직		
나 기보		
노 기욱		
박 용진		
정 영길		
최 진욱		
김 다환		
이 태영		
오 미영		